

	보 도 참 고 자 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미래창조 금융 · 따뜻한 금융 · 튼튼한 금융
	배포 시부터 보도 가능	

작성부서	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			
책임자	김홍식 단장(2156-3300)	담당자	황현일 사무관(2156-3311)	
배포일	2015.9.17.(목)	배포부서	대변인실(2156-9543~48)	총 5매

제 목 : 자본시장조사단 설립 2주년 성과 및 평가

- 효과적인 사건분류 및 패스트트랙 제도 운영을 통해 사건처리 기간 단축 (조사단 설립이전 : 223일 → 이후 : 157일, 평균 66일 단축)
- 현장조사권 및 강제조사권 활용을 통하여 조사효과성 제고
- 중요 사건에 대한 직접 조사를 통해 자본시장의 적폐 해소

I. 자본시장조사단 설립배경 및 주요성과	
1	설립 배경
<p>□ 자본시장조사단은 「주가조작 등 중시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(금융위·법무부·국세청·금감원·거래소 '13.4.18. 공동발표)」에 따라 '13. 9. 17. 설립되었으며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금융위 조사공무원을 중심으로, 관계기관의 불공정거래 조사 관련 정예 인력을 파견받아 운영 중 	
2	주요 성과
<p>① 불공정거래 조사의 컨트롤타워로서, 사건분류* 및 패스트트랙** 제도 운영을 통하여 사건처리 기간을 크게 단축</p> <p>* 사건의 중대성 및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여 중요사건(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에서 조사)과 일반사건(금감원 자본시장조사국에서 조사)으로 분류</p> <p>** (조사단설립이전) 223일 → ('13.9월~'15.8월) 157일 : 평균 66일, 29.6% 단축</p>	

○ 조사·심리기구협의회, 관계기관 실무자협의회 운영 등을 통하여 관계기관 간의 협력 강화 및 미착수 사건 축소

* 조사대기 사건 : ('12말) 75건 → ('15.8월) 40건

② 현장조사권 및 강제조사권(압수·수색)을 활용하여 조사효과성 제고

○ 자본시장법상 조사공무원이 활용할 수 있는 현장조사권 및 강제조사권을 적극 활용하고,

※ 16개 중요사건에 대하여 51회 현장조사, 2회 강제조사를 실시

○ 검찰과의 공조를 통하여 컴퓨터 및 휴대전화에 대한 첨단 디지털 포렌식 조사기법을 도입하는 등 조사효과성 제고

③ 중요 사건에 대한 직접 조사를 통해 자본시장 적폐 해소

○ 투자자에게 손실을 끼치고, 시장의 질서를 교란하는 관행적 불공정거래에 대한 직접조사를 통하여 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투자자 신뢰를 회복

〈자본시장조사단 주요 조사 사건 : 불임참조〉
<p>① 상장회사 IR팀이 기관투자자에게 차별적으로 정보를 사전제공한 행위, ② 연기금 운용역이 매수예정 종목을 공모자에게 알려 선취득한 행위, ③ 회계사가 감사 정보를 이용하여 피감법인의 주식을 매매한 행위, ④ 대기업 집단간 계열사 매각 정보를 이용하여 사전에 해당회사 주식을 매도한 행위 등</p>

④ 국제증권감독기구(IOSCO) 집행위원회 가입을 통하여 국경간(cross-border) 불공정거래 조사 기반 마련

○ 국제증권감독기구 집행위원회에 가입하여('14.4.) 날로 증가하는 국경간(cross-border) 불공정거래를 조사할 수 있는 국제협력 기반을 마련하고,

○ 미국·중국·홍콩 등 해외 조사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불공정거래 조사 역량을 강화

* 중국 증권감독당국(CSPC), 미국의 증권 및 선물감독당국(SEC 및 CFTC), 홍콩 증권감독당국(SFC), 일본 증권감독위원회(ESCO) 등과 정보교류를 통해 이를 활용하는 등 국제공조를 확대

⑤ 조사대상자의 방어권보장을 위한 절차적 합리성 개선

- 문답조사 실시 시 변호인의 입회를 허용*하여 조사대상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, 불공정거래 조사과정 및 조치에 대한 국민신뢰 제고

* 현장점검반을 통하여 접수된 건의사항을 수용('15.4.22.)

II. 성과 평가 및 향후 계획

① (조사신속성 제고) 불공정거래 조사의 컨트롤타워로서 조사·심리기관 간의 협력을 증진하여 사건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등 조사신속성 제고

⇒ 관계기관과의 협업증진을 통하여 시장질서를 조기에 바로세우고, 불공정거래 조사·심리체계가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할 계획

② (조사체계 발전) 자본시장법상 조사공무원에게 부여된 현장조사권 및 강제조사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, 첨단 디지털포렌식 기법을 도입하여 불공정거래 조사체계를 획기적으로 발전·강화

⇒ 날로 고도화되는 불공정거래 수법에 대응하여 조사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감으로써, 추가조작 등 세력에 대한 '무관용·엄단' 원칙을 확립해나갈 것이며

- 해외 해외감독당국과의 적극적인 공조체계 구축을 통하여 외국인의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도 효과적인 조사·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

③ (시장질서교란행위 규제 시행) 시장질서교란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개정 자본시장법의 시행('15.7.1.)에 맞추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총 41회, 4천여명을 대상으로 규제 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,

⇒ 합리적인 규제 운영과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통하여 기존 불공정거래 규제의 공백을 해소하고, 조사·조치 과정의 절차적 합리성을 제고해나갈 계획

(붙임)

자본시장조사단 주요 조사사건

1. 상장회사 IR팀의 기관투자자에 대한 실적정보를 사전제공

- A사 IR팀장은 동사 회계팀으로부터 실적 가마감 결과 영업이익이 시장전망치(컨센서스)보다 크게 적다는 미공개중요정보를 입수 후 증권사 애널리스트 4인에게 전달

- 애널리스트 4인은 미공개 실적정보를 11개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에게 전달하여 총 74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손실을 회피하도록 함



2. 연기금 운용역이 매수예정 종목을 공모자에게 알려 선취득

- B연기금 운용역은 약 1,700억 상당의 자금을 운용하면서 매수예정 주식 종목을 공모자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로 미리 알려,

- 연기금에서 매수할 종목을 미리 매수한 다음 곧바로 2~3% 높은 가격으로 매도주문하고, 연기금의 대규모 매수주문과 체결되게 하는 방법으로 약 15억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함



3. 회계사가 미공개 감사정보를 이용하여 피감법인 주식등을 매매

- C회계법인 회계사 등 6인은 회계감사에 참여하여 지득한 피감법인의 영업실적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여,
 - 공시 전 실적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및 주식선물 등에 투자하는 방법으로 약 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함



4. 대기업 집단간 계열사 매각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

- D사의 경영지원팀 상무와 부장은 대표이사 주재로 개최된 긴급회에서 'D사가 E그룹으로 매각될 것'이라는 정보를 지득하고,
 - 차명계좌 등을 통해 보유하던 D사 주식을 매각하고, 동 정보를 수인에게 전달하여 보유주식의 매도를 권유하여 약 24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함

